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140
----------	-------

발의연월일 : 2026. 4. 7.

발 의 자 : 정춘생 · 이해민 · 황운하
전진숙 · 서왕진 · 김태선
김선민 · 김 윤 · 임미애
최혁진 · 이상식 의원
(11인)

제안이유

지난 해 10월 전남 여수에서 발생한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가명) 사망사건이 최근 언론에 보도되면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및 아동학대 치사 범죄에 대한 형량은 「형법」상 존속살해 및 존속 상해치사 형량과 동일해, 영유아를 포함해 자기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에 대한 범죄형량을 상향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부모에 대해서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어 친권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이 필요함.

이에 아동학대살해 및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중상해를 저지른 자에

대한 형량을 강화하고, 친권자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살해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아동학대치사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나. 아동학대중상해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친권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함(안 제7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사형 또는 무기 징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무기 또는 5년”을 “사형, 무기 또는 10년”으로 한다.

제5조 중 “3년”을 “10년”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친권자 및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2항”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및 이 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u>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u>에 처한다.</p> <p>②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u>무기 또는 5년</u>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③ (생략)</p> <p>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u>3년</u>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p> <p>제7조(<u>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u>)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p>	<p>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 ① - ----- ----- -----<u>사형 또는 무기징역</u>----- -----.</p> <p>② ----- ----- -----<u>사형, 무기 또는 10년</u>-----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아동학대중상해) ----- ----- ----- ----- ----- -----<u>10년</u>----- -----.</p> <p>제7조(<u>친권자 및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u>)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친권자 및 이 법 제10조</p>

<p>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 의 1까지 가중한다.</p>	<p><u>제2항</u>----- ----- -----.</p>
---	---